

## 고소장 접수 방법:

개인, 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다음으로 서면 UCP 고소장을 우송하거나 팩스 또는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

**Julie Hall-Panameño, Director**  
**Educational Equity Compliance Office**  
**Los Angeles Unified School District**  
**333 South Beaudry Avenue - 20<sup>th</sup> Floor**  
**Los Angeles, CA 90017**  
**팩스: (213) 241-3312**  
[EquityCompliance@lausd.net](mailto:EquityCompliance@lausd.net)

장애인 또는 서면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수 없는 사람은 해당 학교의 행정관/담당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또는 EECO 에 (213) 241-7682 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 교육구는 가능한 최대의 범위로 기밀을 엄격히 지킬 것이다. 교육구는 고소장을 접수한 사람 또는 고소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복행위를 금지한다.

E.C. §262.3,에 의거하여, 고소인은 민법 구제조치가 제공될 수 있음을 고지받으며, 이에는 위반조치, 접근금지령 또는 기타 구제/명령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으며, 주 또는 연방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해당되는 경우 왕따 법규가 포함될 수 있다.

교육구 UCP 방침 및 고소 절차 안내서는 무료로 제공된다.

UCP 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다면, Dr. Joseph Green, UCP 코오디네이터에게 (213) 241-7682 으로 연락하십시오.

## 고소건 조사 및 응답:

각 고소건은 UCP 방침/절차에 의거한 해당 법규, 프로그램 및 준수에 대해 지식을 갖춘 적절한 부서에 의해 조사된다. 조사 및 교육구 응답은 다음과 같다:

1. 고소 당사자와 교육구 직원에게 고소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기회를 제공한다.
2. 증거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타 사람이나 목격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취득한다.
3. 관련 문서를 검토한다.
4. 발견 사실에 대한 보고서가 고소인의 모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며, 이에는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사실 그리고 교정 조치를 포함한 교육구 결정이 명시되어 있다.
5. 고소인이 조사 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서면 고소장을 접수한 날짜로부터 60 일 이내에 사건 조사를 마무리한다.
6. 항소 절차를 통지한다.

## 항소 방법:

UCP 와 관련하여 교육구 결정/발견 사실은 교육구 결정을 받은 지 15 일 이내에 서면 항소서를 주에 제출함으로써 항소할 수 있다. 이 항소서는 반드시 결정을 항소하는 근거를 설명하고, 교육구의 결정에 대한 사실이 잘못되었거나 법이 잘못 적용된 방법을 명시하고 원본 고소장과 교육구의 결정 사본을 포함해야 한다. 항소서는 다음 주소로 보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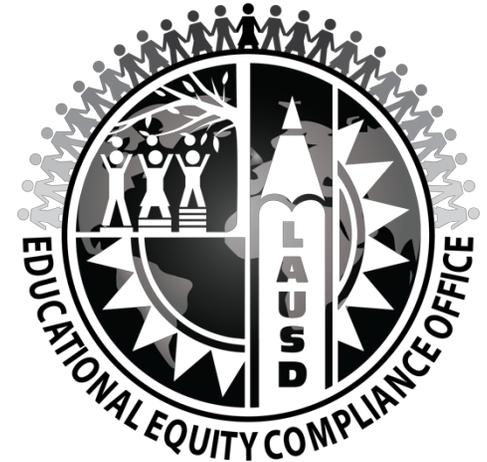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1430 N Street**  
**Sacramento, CA 95814**  
<http://www.cde.ca.gov/re/cp/uc>

서면 고소장이 접수된 날짜로부터 조사 및 교육구 답변은 60 일 시한이 적용된다.

##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균일  
고소

절차 (UCP)



교육적 형평성  
준수 부서  
(EECO)

(213) 241-7682

## 왜 이 안내서를 만들었는가?

이 안내서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연례 통지서이며, 교육구는 해당 주법 및 연방법 및 규제법을 준수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리고 준수 불이행을 조사하며, 이에는 어떠한 보호된 집단을 상대로 불법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왕따행위에 대한 혐의주장 또는 이 안내서에 명시된 UCP 관련 법규 준수 불이행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본 교육구는 캘리포니아 주 규제법 §§4600-4687, 그리고 교육구 방침 및 절차에 명시된 절차에 의거하여, 이런 고소건 해결을 추구할 것이며. 이에는 절차 그리고/또는 이런 UCP 고소에 대한 교육구 결정에 항소하는데 참여한다는 사유로 보복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포함된다.

위탁 보호 학생, 홀리스 학생, 교육구에 등록된 이전 청소년 법원 학생 및 군인 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적 권리 및 고소 절차에 대한 표준 통보는 교육법 (EC) §§48645.7, 48853, 48853.5, 49069.5, 51225.1 및 51225.2. 에 명시된 대로 게시된다.

## 포함된 보호된 집단:

형법 §422.55, EC §§200, 220, 및 정부 규제법 §11135 에 명시된 보호된 집단을 토대로 불법 차별, 괴롭힘, 또는 학생 왕따 행위 혐의주장에는 실질적이거나 인지된 성, 성적 성향,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인종이나 민족, 민족 집단 식별, 조상, 국적, 출생 국적, 이민 신분, 종교, 피부색,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연령 또는 중요한 지원을 수행하거나 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이런 실질적이거나 인지된 사람이나 집단과 관계가 있다 또는 상당한 도움을 제공했다는 근거하에 행해진 행위도 포함된다

차별행위, 괴롭힘, 위협, 또는 왕따 행위 고소건은 이런 혐의사건의 사실을 처음 알게된 날짜로부터 반드시 육 개월 이내에 접수되어야만 한다.

## UCP 사법 부관할권:

- 보호된 집단을 상대로 한 불법 차별, 괴롭힘, 위협 또는 왕따 행위 (고용인-학생, 학생-학생, 제 삼자-학생, 고용인-제 삼자)

### UCP 관련 기타 프로그램 및 활동들:

- 성인 교육
- 방과후 교육 및 안전
- 농업 커리어 기술 교육
- 미 원주민 교육 센터 및 조기 유아 교육 프로그램 평가
- 이중언어 교육
- 캘리포니아 동료 교사 지원 및 심의 프로그램
- 커리어 기술 및 기술 교육 그리고 커리어 기술: 기술 트레이닝 (주)
- 커리어 기술 교육 (연방)
- 차일드 케어 및 발달
- 아동 영양
- 보상 교육
- 통합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 교육적 콘텐츠가 없는 교과목 교시
- 열악한 경제 지원
- 위탁가정에 있는 학생, 노숙자 학생, 이전에 청소년 법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현재는 교육구에 등록해있는 학생, 군인 가정의 자녀, 이주 학생 및 신입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을 위한 교육
- 모든 학생의 성공법/낙오자 없는 교육법 (타이틀 I-VII)
- 로컬 콘트롤 및 책무 플랜 (LCAP)
- 이주자 교육
- 체육 교육 수업 분당 시간
- 학생 비용

- 수유, 임신 또는 육아 중인 학생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
- 리저널 작업 센터 및 프로그램
- 학교 안전 플랜
- 특수 교육
- 주 프리스쿨
- 흡연 예방 교육

교육구 소속 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교육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학생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학생 비용은 수업 또는 등록 활동의 조건으로, 수업 또는 과외 활동 참여 조건으로, 수업 또는 활동이 선택 또는 보상 또는 학점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에게 부과되는 비용이다. 자물쇠, 락커, 책, 수업 도구, 악기, 의류 또는 기타 자료 또는 장비를 얻기 위해 학생에게 요구되는 보증금 또는 기타 지불금; 교육 활동과 관련된 재료, 비품, 장비 또는 옷을 얻기 위해 학생이 해야 하는 구매. 학생 비용 고소건은 학교장, 교육감 또는 담당인에게 제출될 수 있다.

고소건은 익명으로 제출될 수 있는데, 학생 비용 및 LCAP 고소건을 포함하여 비준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이어지는 증거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학생 비용 고소건은 위반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날짜로부터 일 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교육구는 고소건 제기 전 일 년 이내에 학생 비용을 지불한 모든 학생, 학부모 / 보호자를 확인하여 이런 비용을 완전히 상환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고소건에 합당성이 발견되면, 구제조치가 해당 학생에게 제공되며, 교육적 콘텐츠 없는 교과목, 모유 수유 학생을 위한 편의조치, 위탁 보호 학생, 홀리스 학생, 교육구에 등록된 이전 청소년 법원 학생 및 군인 가족 학생의 경우이다; 구제조치는 학생 비용, 체육 교육 수업 분당 시간 그리고/또는 LCAP 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에 모든 해당된 학생 그리고 부모/보호자에게 제공될 것이다.